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2014. 2.



차 례

I. 보상금 제도의 이해	7
1. 개념 및 도입취지	8
2. 법적 근거	9
3. 보상금 지급 기준	11
4. 질의 및 응답	15
II. 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19
1. 개요	20
2. 약정체결 안내	22
3. 약정체결 방법 상세안내	24
4. 보상금 산정 및 지급	33
5. 보상금 분배	40
III. 보상금 제도 이용 가능범위	43
1. 저작물 이용	44
2. 저작물의 이용 예시 및 사례	44
3.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의 표시	45
IV. 보상금 제도운영 일정표	46
V. 약정서	49





I. 보상금 제도의 이해

1. 개념 및 도입취지
2. 법적 근거
3. 보상금 지급 기준
4. 질의 및 응답

1. 개념 및 도입취지

가. 개념

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②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을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라고 합니다.

나. 도입취지

① 학교 교육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며 학교 교육에서 각종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②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저작물마다 사전에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학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학교가 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게 하는 보상금 제도를 둔 것입니다.

2.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p>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p> <p>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4.22></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2009.4.22></p> <p>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p>	<p>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배포·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p> <p>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p> <p>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p> <p>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p>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정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p> <p>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p> <p>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 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p>

<p>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p>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p> <p>⑨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용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p>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법 제25조 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개정 2009.7.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p>②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p>③ 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p> <p>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에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에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3. 보상금 지급 기준

가. 기준 마련 경과

① 수업목적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기준")은 연구용역, 세미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08~'11)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지정, 기준 연구 및 공청회 (10여 차례)
- ('11. 04. 28)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1차)
- ('12. 04. 27) 지급기준 개정 고시(2차)
- ('13. 11. 28) 교육부, 문체부, 대학 비대위 및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 합의
- ('14. 02. 25) 지급기준 개정 고시(3차)

나. 기준 고시 안내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보상금을 수령단체에 지급해야 하는 **지급의 무 당사자이며, 이용자**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수업목적보상금 대신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이용자는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도 도입 합의에 따라 2011년 및 2012년 보상금은 면제되었으며, 2013년도분은 합의에 따라 「포괄방식」으로 청구됩니다. 다만, 2013년도 이용내역을 입증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종량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이용내역 제출 및 산정장치 인증은 2014년 3월 말까지, 보상금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종량방식」을 선택 할 경우 복제방지조치, 접근제한조치, 보상금산정장치 등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수령단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보상금 지급은 동영상, 음악, 사진, 잡지 등 수업목적에 위하여 이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저작물도 포함됩니다.

④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 이용방법은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업목적으로 이용행위는 여러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강의교재를 만들었다면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해당되고 복제된 강의교재를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였다면 저작물을 배포하고 전송한 것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상 저작물을 수업시간에 상영하였다면 저작물을 공연한 것에 해당되며, 음악저작물을 실연한 경우 저작물을 공연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모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됩니다. * 2014.07.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⑤ 2014년 개정된 보상금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경우.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보상금 납부 :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 아래 보상금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납부
6. 보상금 기준
 - 1) 보상금 기준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중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 :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 1건당 7.7원 ● 음악 : 1곡당 42원 ● 영상물 : 5분 이내 176원 <p>*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p>	<p>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 1,300원 ● 전문대 1,200원 ● 원격대 1,100원

2) 기준에 대한 해석

- “일반대” 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 “전문대” 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 “원격대” 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 “종량방식” 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방식” 은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 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학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금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교는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7. 참고사항

- “수업 목적” 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 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 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 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 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4. 질의 및 응답

가. 보상금제도로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Q. 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 저작물의 이용은?

A. 첫째,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사전이용허락을 얻고 그 과정에서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약정하여야 하나,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절차는 면제되고 사후에 보상금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둘째,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까지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2014.07.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셋째, 제도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은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원격교육이 날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교육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Ⅲ. 보상금제도 이용가능범위」의 '저작물의 이용예시 및 사례' 참조

나. 보상금제도가 이용허락과 다른 점은?

Q. 보상금제도가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허락과 다른 점은?

A. 보상금제도는 저작물의 쉽고 편리한 이용이 요구되는 특별한 범위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되 사후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 제도입니다.

<표> 제도 비교표

구 분	보상금제도	이용허락
시 점	저작물 이용 후	저작물 이용 전
관리주체	보상금 수령단체의 일괄관리	각 저작권자의 개별관리
저작자의 권 리	보상청구권만 행사 가능	독립·배타적 권리(재산권)
이용절차	저작권자 이용허락 불필요, 사후 보상금 지급의무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필요, 불허시 이용 불가
비용지급	문화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수령단체에 지급	저작자가 요구하는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지급
이용저작물	공표된 저작물	저작자로부터 허락받은 저작물
이용형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시 또는 공중송신* * 2014.07.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저작권자 허락 범위 내
기 타	권리자의 재산권 제한으로 시간·경제적인 면에서 이용자에게 유리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득하는 비용 및 노력을 이용자가 들여야 함

다. 보상금제도 상 교육기관의 범위는?

Q.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서의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제도를 통해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교육기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수업목적 보상금 대신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납부합니다.

<표> 학교 및 교육기관의 범위 (예시)

구분	근거법률(예시)	교육기관	비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예시)	평생교육법	- 원격대학 등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의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공공직업훈련학교 등 - 지정직업훈련학교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전문학교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 유치원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의무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 공민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등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의무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 원격대학 - 기술대학 등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업지원기관 (예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업지원기관 (예시)	- 국립특수교육원 - 국사편찬위원회 - 교수학습지원센터 - 유아교육진흥원 등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지급 의무

Q. “수업 목적” 이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업목적'이라 함은 해당 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을 제공할 목적임을 의미합니다.

Q.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양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학교 등의 수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라 함은 미술작품의 전시, 서적의 발행, 학술논문의 게재, 홈페이지공개, 영화 개봉, 음반의 판매 등 저작물이 일반에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라. 보상금을 왜 지급하여야 하나요?

Q.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에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인 저작권(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Q.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령단체는 보상받을 권리자를 대신하여 자기명의로 재판 상 및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가지는 교육기관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령단체는 권리자를 대신하여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마. 보상금은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Q.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A. 보상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금은 개별 저작권자가 아니라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입니다. 보상금 수령단체는 저작권자의 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일괄 수령하여 개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고시 제2013-36, 2014. 1. 6)

Q.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A.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그리고 동법 제31조의 '도서관보상금'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아 개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상 허가받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써, 작가·학자 등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등이 회원인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협회의 모든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기적인 업무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Q.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 A.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참조(11p.)

Q. 이용 할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A. 협회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청구할 계획입니다.
☞ 「Ⅱ. 보상금제도 이용안내(19p.)」 참조

Q. 어떻게 지급하나요?

- A. 세부 사항은 약정에 근거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V. 보상금 제도운영 일정표(46p.)」 참조

사. 어떻게 사용되나요?

Q.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A. 보상금은 권리자에게 전액 분배되며, 보상금의 징수, 분배 등에 필요한 절차 소요비용 등은 수령단체 수수료로 공제됩니다.

Q. 분배하고 남은 미분배 보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A. 보상금 수령 거부,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배공고 3년까지 분배를 위해 보관하며, 기간 중에 저작자가 나타나면 해당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분배공고 3년이 경과할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자라면 어떻게 분배 받을 수 있나요?

- A.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 분배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시면 권리관계 확인 이후 14일 이내에 분배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Q. 외국에도 우리나라 같은 제도가 있나요?

- A. 외국에서도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일정부분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만, 허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처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허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은 대부분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내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저작권자 사전허락, 저작권료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보상금 제도에 비하여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 소요가 이용자에게 발생 될 것입니다.

* 2014.07.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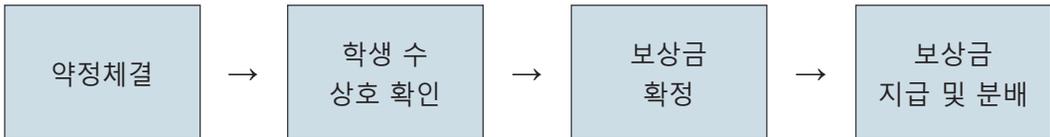
II. 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1. 개요
2. 약정체결 안내
3. 약정체결 방법 상세안내
4. 보상금 산정 및 지급
5. 보상금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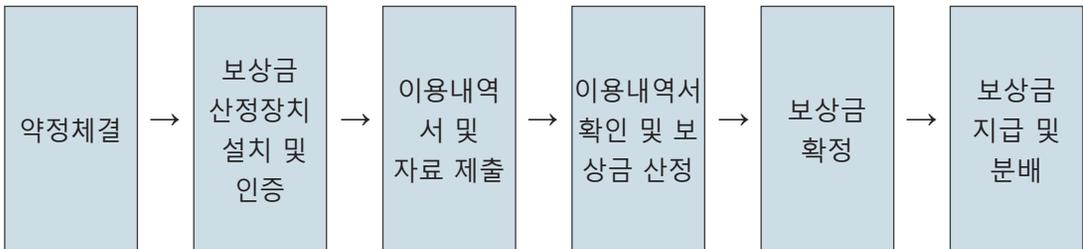
1. 개요

가. 업무 흐름도

① 「포괄방식」약정체결



② 「중량방식」약정체결



나. 「포괄방식」이용 절차

① 약정체결

-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수령단체')와 저작물 이용자인 대학·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이하, '교육기관')간의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② 학생 수 상호 확인

-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을 위한 학생 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령단체에 제출하고, 수령단체는 제출된 학생 수를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 4월, 10월 공시기준 재학생 수 평균 (대학원생 포함, 졸업유예자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5% 일괄할인 적용)

③ 보상금 확정

- 수령단체는 확정된 학생 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대학별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④ 보상금 지급 및 분배

- 수령단체는 확정된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청구하고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령단체에 지급합니다.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이 지급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다. 「종량방식」 이용 절차

① 약정체결

-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수령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인 대학, 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이하, '교육기관')간의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② 보상금 산정장치에 설치 및 인증

-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전송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령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내역서 및 자료 제출

- 교육기관은 저작물 이용내역서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온라인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관리자 계정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오프라인 이용 저작물의 복사물
3. 교육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 위의 해당자료를 허위 또는 미제출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저작물 이용내역서를 상호 비교하여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⑤ 보상금 확정
 - 수령단체는 확정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확인 요청하고 상호간에 검토 후에 최종 확정합니다.
- ⑥ 보상금 징수 및 분배
 - 수령단체는 확정된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청구하고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령단체에 지급합니다.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2. 약정체결 안내

가. 체결목적

- ① 약정체결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수령단체와 교육기관 간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특히, 관련 저작권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실무적인 내용까지 명확히 정하여 향후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나. 체결방법

- ① 온라인 :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를 통한 계약
- ② 오프라인 : 우편을 통한 약정서 교환

다. 약정체결 당사자

- ① 이용자 : 교육기관
- ② 보상금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라. 보상금 지급방식 선택

① 보상금 지급방식은 「포괄방식」과 「종량방식」중 선택 가능합니다. 2013년도분 보상금 지급은 합의에 따라 「포괄방식」으로 청구됩니다. 다만, 2013년도 이용내역을 입증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종량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이용내역 제출 및 산정장치 인 증은 2014년 3월 말까지, 보상금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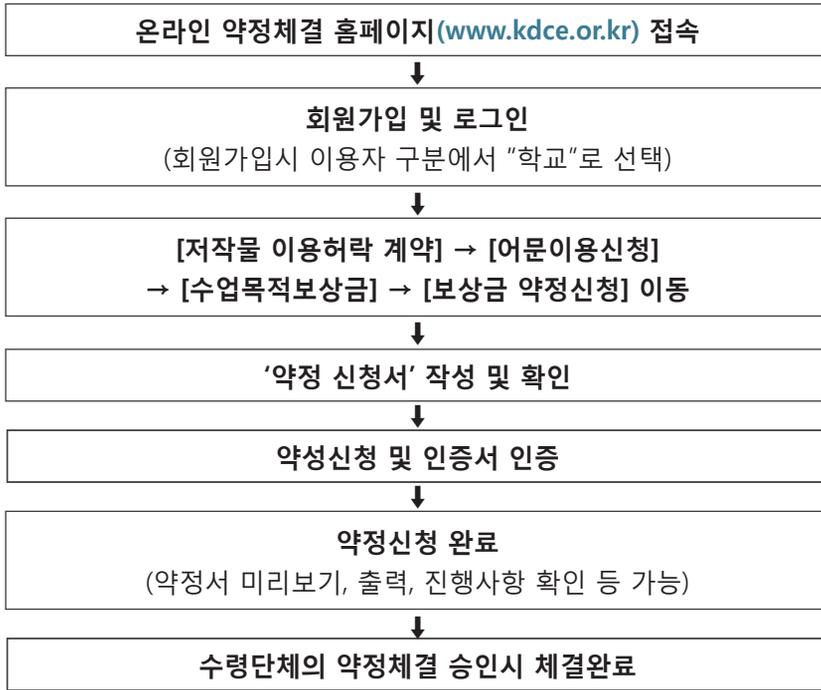
② 보상금 기준

포괄방식 (학생수에 따른 지급)	● 대학 종류별 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원격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
	구분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								
● 어문 :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 : 1매당 3.8원									
● 이미지 : 1건당 7.7원 ● 음악 : 1곡당 42원 ● 영상물 : 5분 이내 176원									
종량방식 (이용량에 따른 지급)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 (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3. 약정체결 방법 상세안내

가. 온라인 약정체결 시

① 절차



② 약정체결 화면 설명

- 온라인 약정체결 홈페이지 접속(www.kdce.or.kr)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 회원가입 1 : '회원가입' 페이지 이동 후, 이용자 구분에서 '학교' 선택 및 약관 동의

* 위 약관에 동의하셔야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구분을 선택한 후 약관동의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

개인
 사업자
 학교
 임의단체(학회 등)

- 회원가입 2 : 이용자정보 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회원가입



☞ 회원서비스 · 회원가입



JOIN 회원가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신청 및 전자계약 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사설인증서 첨부 필수)

■ 학교

(*)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ID	<input type="text"/>	* 중복확인 (4-10자의 영문, 숫자 조합)
비밀번호	<input type="text"/>	* (4자-10자의 영문, 숫자 조합)
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text"/>	*
학교명	<input type="text"/>	*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중복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중복확인)
대표자 성명	<input type="text"/>	*
법인번호	<input type="text"/>	
우편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찾기"/>
사업장 주소	<input type="text"/>	
대표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예: 02-1234-5678)
대표 팩스번호	<input type="text"/>	(예: 010-1234-5678)
담당자명	<input type="text"/>	*
담당자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예: 02-1234-5678)
담당자 핸드폰번호	<input type="text"/>	(예: 010-1234-5678)
담당자 이메일주소	<input type="text"/>	
홈페이지	<input type="text"/>	
이메일수신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small>(이용계약 진행 현황 및 저작권 권리변동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small>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 저작권찾기 사이트 통합로그인 동의여부

현재 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CLMS)과 저작권찾기사이트는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합회원로그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동의에 따라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자동회원가입 또는 자동로그인 됩니다.

동의합니다.

- 로그인 : '로그인' 페이지 이동 후, 회원가입 계정 정보로 로그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Contact us | Sitemap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소개 | 저작권정보수집 | 저작권정보제공 | 저작권이용허락계약 | 알림마당

개요 | 통합검색

회원서비스

저작권 이용의 원스탑 서비스 KDCE

회원가입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LOGIN 로그인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로그인 시에는 사설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설인증서가 없는 경우 하단의 사설인증서 발급 버튼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 사설인증서 로그인

사업자
 개인

사설자번호

사설인증서 로그인

*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무료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 회원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사설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설인증서 발급](#)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보호정책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

135-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6층, 7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COPYRIGHT(C) 20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관원사이트..... GO

- '로그인' 완료 화면

대학님 반갑습니다.

Logout

회원정보수정

HOME

Contact us

Sitemap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알림마당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 온라인 계약페이지 접속

* 접근경로 :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 [어문이용신청] → [수업목적보상금] → [보상금 약정 신청] 이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대학님 반갑습니다. Logout 회원정보수정 HOME Contact us Sitemap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소개 저작권정보수집 저작권정보제공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알림마당

소개 | 음악이용신청 | **어문이용신청** | 뉴스이용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어문 저작권이용허락계약서비스

HOME 로그인아웃 Contact us Sitemap

서비스이용안내 저작권정보검색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알림마당

로그인정보

대학님 환영합니다. 로그인

회원정보수정 **사실인증서 관리**

복사업소 이용신청 바로가기 >

계약서 원본확인 바로가기 >

다운로드

온라인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서비스 매뉴얼 down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권리자인 저작권자(시인, 소설가 등)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신탁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사권송권협회와 이용자가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 합니다.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저작권이용허락계약해지

저작권이용허락계약

보상금

어문 신규저작물 등록현황

더보기 >

저작물명	저작자	등록일
------	-----	-----

공지사항

문의답하기

자주묻는질문

더보기 >

- 새로운 공지사항 2013.06.14
- 교과용도서 저작권보상금 분배 공고 2008.03.11
- 시스템 점검 안내 2008.07.11
- [의견수렴]문예학술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2008.06.27
- [공인인증서]저작권업무용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실시 2008.06.13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보호정책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
135-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6층,7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COPYRIGHT(C) 20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를 선택하세요 go

- 약정신청 1단계 : '계약담당자' 및 '업무담당자' 정보 작성
- 약정신청 2단계 : '대학분류 (일반대/전문대/원격대)' 선택
- 약정신청 3단계 : '약정구분 (포괄/종량)' 선택

보상금약정신청

☞ 수업목적보상금 · 보상금약정신청

어른이용 2년만에 OK!



신청서 입력	>	신청내역 확인
---------------	---	----------------

신청자정보	상호명	대학	업태/업종	교육/학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서구분	수업목적보상금			
수령단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신청자정보와 동일

계약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input type="text"/>		
	담당부서	<input type="text"/>	직급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신청자정보와 동일

업무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input type="text"/>		
	담당부서	<input type="text"/>	직급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대학분류*	<input type="text" value="선택"/>	약정구분*	<input type="radio"/> 종량 <input type="radio"/> 포괄
--------------	---------------------------------	--------------	---

작성완료 >
취소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 약정신청 4단계 : '약정구분'에 따른 관련파일 첨부 (샘플 다운로드 가능)

• 포괄방식 선택시

대학분류*	선택 ▼	약정구분*	<input type="radio"/> 종량 <input checked="" type="radio"/> 포괄
학생수정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첨부파일은 최대 5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샘플양식(엑셀)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표본선정 실태조사 기초자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첨부파일은 최대 5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샘플양식(엑셀)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input type="button" value="작성완료 >"/>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 종량방식 선택시

대학분류*	선택 ▼	약정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종량 <input type="radio"/> 포괄
보상금 산정장치 접근정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첨부파일은 최대 5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샘플양식(엑셀)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학생수 정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첨부파일은 최대 5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샘플양식(엑셀)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input type="button" value="작성완료 >"/>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 약정신청 5단계 : 약정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및 [약정신청] 클릭

신청서 입력 > 신청내역 확인

신청자정보	상호명	대학	업태/업종	교육/학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신청서구분	수업목적보상금			
수령단계	한국복제전송			
계약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담당부서			
	이메일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담당자명	직급	
	담당부서			
	이메일			
	전화번호			
대학분류*	일반대	약정구분*	포괄	
표본선정 실패조사 기초자료*	(포괄)표본선정실패조사기초자료.xls			
학생수정보*	(포괄)학생수.xls			

웹 페이지의 메시지 X

?

작성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사설인증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인증서 발급]버튼을 클릭.

뒤로가기
약정신청 >
취소
인증서발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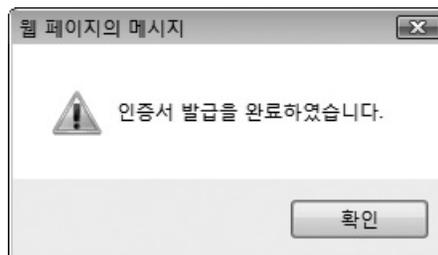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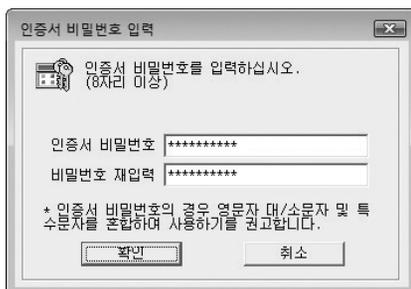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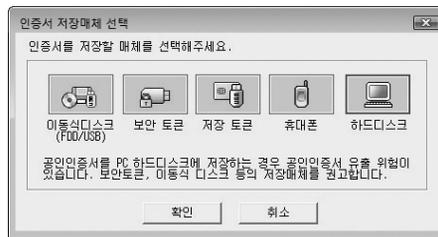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 인증서 적용 승인 : 사설인증서 선택 후 적용 (등록안내 메시지 팝업시 등록확인)



※ 사설인증서가 없을 경우 [인증서발급] 클릭시 즉시 발급가능

- [인증서발급] → [인증서 저장매체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발급완료]



- 약정신청 완료 및 약정서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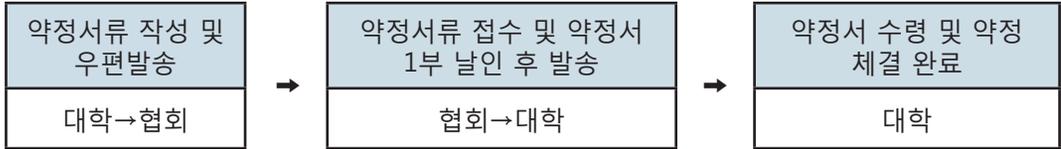
- 약정신청 진행상황 확인 : '신청번호' 클릭시 세부내역 조회 가능

신청번호	계약번호	약경구분	대학분류	수령단계	진행상태	신청일자	신청취소일자
201402211		포괄	일반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계약신청	2014-02-21	
201402182		포괄	일반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신청거절	2014-02-18	
201402173		포괄	전문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신청취소	2014-02-17	2014-02-18
201402172		중량	일반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신청취소	2014-02-17	2014-02-17

- 약정체결 완료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승인처리 후 약정체결 완료

나. 오프라인 약정체결 시

① 절차



② 제출 서류

- 약정요청 공문 1부.
- 약정서 날인(간인포함) 2부.
- <약정서 별지서식·1> 수업목적보상금 이용 대학 정보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관련서류 양식 제공 (협회 홈페이지: www.korra.kr)

다. 약정체결 시 유의사항

①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 및 수업목적보상금 개정 고시에 따라 2013년도분 보상금 지급은 「포괄방식」으로 청구됩니다. 다만, 2013년도 이용내역을 입증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종량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이용내역 제출 및 산정장치 인 증은 2014년 3월 말까지, 보상금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산정방식(포괄 또는 종량)은 지급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지급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합니다.

③ 분교(캠퍼스)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본교에서 일괄 지급할 것인지, 또는 분교(캠퍼스)와 본교가 각각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교가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와 분교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가. 보상금 산정방식

① 보상금 산정방식은 교육기관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포괄방식」은 학생 수를 보상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량방식」은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이용내역서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 합니다. 보상금 산정자료의 작성 요령은 약정서 별지서식 이용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상금 산정은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보상금 고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수령단체와 교육기관 간의 상호 검증을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① 포괄방식

- 보상금 산정자료의 제출

- 「포괄방식」을 선택한 교육기관은 '학생 수(4월 및 10월 공시 학생 수)'를 명기한 '수업목적보상금 이용 대학 정보' (<약정서 별지서식·1> 참조)를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학생 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지급대상 학생 수* = (4월 공시 학생 수 + 10월 공시 학생 수)의 평균값

* 대학원생 포함, 졸업유예자 등을 감안하여 5% 일괄할인 적용

- 보상금 산정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학생 수'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은 산정한 보상금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수령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청구합니다.

- 보상금 산정 예시

「포괄방식」 보상금 = 보상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학생 수

< 산정예시 1 > 일반대

보상금 지급기준 일반대 1,300원	×	지급대상 학생 수 1,520명	=	보상금 산정액 1,976,000원
------------------------	---	---------------------	---	-----------------------

< 산정예시 2 > 전문대

보상금 지급기준 전문대 1,200원	×	지급대상 학생 수 3,000명	=	보상금 산정액 3,600,000원
------------------------	---	---------------------	---	-----------------------

< 산정예시 3 > 원격대

보상금 지급기준 원격대 1,100원	×	지급대상 학생 수 7,000명	=	보상금 산정액 7,700,000원
------------------------	---	---------------------	---	-----------------------

- 보상금 지급

-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수령단체가 교육기관에 청구하며,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② 「종량방식」

- 보상금 산정자료(이용내역서 등)의 제출

- 교육기관이 「종량방식」을 선택한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이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 수령단체가 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기한 : 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12월말)하고,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저작물의 복제물(강의자료집, 도서류의 경우 표지, CD 및 음반은 제작사 정보 확인 가능한 부분을 복사한 내역)은 학기별로 수령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내역서 검수 및 보상금 산정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이용내역서와 복제물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내역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저작물 이용내역서와 약정체결 시 제공받은 온라인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접속 ID 및 Password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수령단체의 확인 후 산정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은 교육기관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되며, 상호 확정완료 후 수령단체는 확정된 보상금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합니다.

- 보상금 산정 예시

- 「종량방식」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종량방식」보상금 = 저작물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금 기준
 ※'영상'의 경우 보상금 기준에 따라 5분 초과 이용시 10초당 10원씩 가산하여 산정함

< 산정 예시 >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비고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금 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5p	50명	7.7원/1면	1,925원	
		PT	복제/전송	15p	50명	3.8원/1면	2,850원	
		이미지	복제/배포	2건	50명	7.7원/1건	77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6,445원		

- 보상금 지급

-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수령단체가 교육기관에 청구하며,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종량방식」 선택 시, 교육기관에서는 '저작물 이용내역서'(약정서 <별지서식·2>)를 매 월 작성하여 제출(기한 : 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12월말)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또는 미 제출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 「종량방식」이용내역서 온라인 제출방법

① 수령단체 '수업목적보상금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edu.korra.kr>)

- 교육기관 관리자 로그인 : 약정시 교육기관 관리자 계정 별도 제공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의 관리자(1인)에 대한 계정(ID/Password)을 제공하며, 해당 관리자는 교육기관 내부의 여러 사용자에 대한 계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수업목적보상금시스템



교육기관
관리자

교육기관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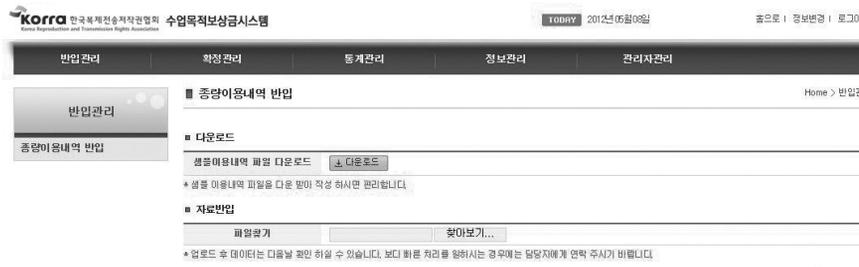
⑥ 이용내역 반입 1 : 교육기관 관리자

- 경로 : 반입관리 > 종량이용내역 반입 > “이용내역 반입” 버튼 클릭



- 엑셀로 작성한 이용내역 업로드

* 이용내역서 작성을 위한 관련 샘플양식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샘플양식에 기재된 2열의 예시 부분은 삭제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⑦ 이용내역 반입 2 : 교육기관 사용자

- 교육기관 내부의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 시에는 엑셀파일 등록 및 온라인 이용내역 화면에서 직접 이용내역 입력하여 등록 가능

- 경로 : 반입관리 > 온라인이용내역 > “온라인 등록” 버튼 클릭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 이용내역 직접 입력 후, 임시저장 > 입력완료 > 검증완료 버튼 클릭

㉔ 교육기관이 작성한 이용내역에 대한 협회 담당자 확인 및 검증

㉕ 교육기관의 이용내역 재검증 및 확정

- 경로 : 확정관리 > 종량이용확정 > "교육기관 확정" 버튼클릭

㉖ 완료

다. 자료제출 유의점

① 교육기관은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상의 오기나 정보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보상금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분배 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상호검증, 자료교환, 확인작업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렴단체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드시 지정하는 사이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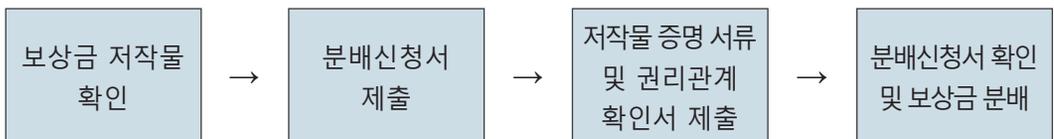
5. 보상금 분배

가. 개념

① 수령단체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실태조사 자료(포괄) 및 이용내역서, 복제물(종량)에 근거하여 분배합니다. 투명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한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이용 분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교육기관에서 제출하는 저작물 이용내역서는 보상금 분배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 표시 등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분배 업무 흐름도



나. 보상금 분배자료 확보

① 분배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포괄방식)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내역서를 작성하고 복사물을 수집하여 분배자료로 활용합니다.

- 실태조사는 전체 대학 설문조사(기초조사) 후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는 약정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수행 합니다.

② 교육기관 제출 자료 활용 (종량방식)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이용내역서와 복사물을 검수하여 확정하고 분배자료로 활용합니다.

- 교육기관에서는 수업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 정보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분배 데이터 가공 및 제공

- 수령단체는 교육기관 제출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를 '저작물 정보'로 가공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권자 대상 '이용 저작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보상금 분배

① 수령단체는 전년도 발생 보상금을 익년도에 지급받아 분배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 및 보상금 발생 내역을 알려 주고, 저작권자는 수령단체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저작물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의 특성상 교수님은 대부분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동시에 '창작자'로서 저작권자의 지위도 갖게 되므로, 대학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중 상당액은 교수님께 분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연구소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한 서적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면 대학 또한 보상금을 분배 받게 될 것입니다.

③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저작권자는 제도를 통해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수령여부에 대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고시의 별지서식인 "수업 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령단체(고시 이후 2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의서에 명기된 저작물은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상금 분배신청

①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최초에 아래의 서류를 수령단체에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령단체는 서류를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권리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표>보상금 분배신청 서류

개인	단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분배신청서 · 권리관계 확인서 · 저작물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의 경우 상속관계 확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분배신청서 · 권리관계 확인서 · 저작물 사본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양도인의 경우 위임관계 확인증명서 	

② 첫 보상금 분배 이후 동일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으로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해부터는 별도 분배신청 절차 없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Ⅲ. 보상금제도 이용 가능범위

1. 저작물 이용
2. 저작물의 이용 예시 및 사례
3.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의 표시

1. 저작물 이용

가. 조건 :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보상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내용 : 수업자(교수)는 저작물의 일부분(부득이한 경우 전체)을 수업목적으로 이용가능

다. 이용방법 :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 2014.07.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라. 이용가능 저작물 : 국내 및 해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①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25호)(예시 : 도서 발행, 논문 게재, 영화 상영, 음반 판매, 홈페이지 게재 등)

② 일부분에 한정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가능 (예시 : 시 1편, 사진 전체 등)

③ 해외 저작물도 이용 가능

마. 수업목적에 한정 : '수업목적'이라 함은 해당 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을 제공할 목적임을 의미함

2. 저작물의 이용예시 및 사례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어문 저작물	·학술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소설, 시, 수필, 칼럼, 연극·영화·드라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가. 다른 교수의 논문 일부를 ①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⑤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나. 극본 또는 시나리오 를 ①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⑤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다. 신문기사 의 출처를 밝히고 ①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③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본인이 인터뷰에 응한 기사 포함

III. 보상금제도 이용 가능범위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이미지 저작물	·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만화, 삽화 등 · 일부 저작물의 경우 이중적 성격 보유	라. 인터넷 백과사전 , 국내·외 저널, 기사 내의 그림·사진 또는 도표를 이용 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마.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그 사진, 책표지, 만화 및 포스터 를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바. 게임로고 또는 게임 영상물 을 이용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음악 저작물	· 녹음 형태의 어학저작물 등의 오디오저작물 포함 · 악곡, 악보 등	사. 가요, 팝송, 연주곡 ①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삽입 하는 경우 아. 악보를 ①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③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영상 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물, 동영상 파일 등	자. DVD,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를 ① 강의실에서 상영하는 경우 ②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에 삽입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④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차.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 화면을 캡처 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그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이용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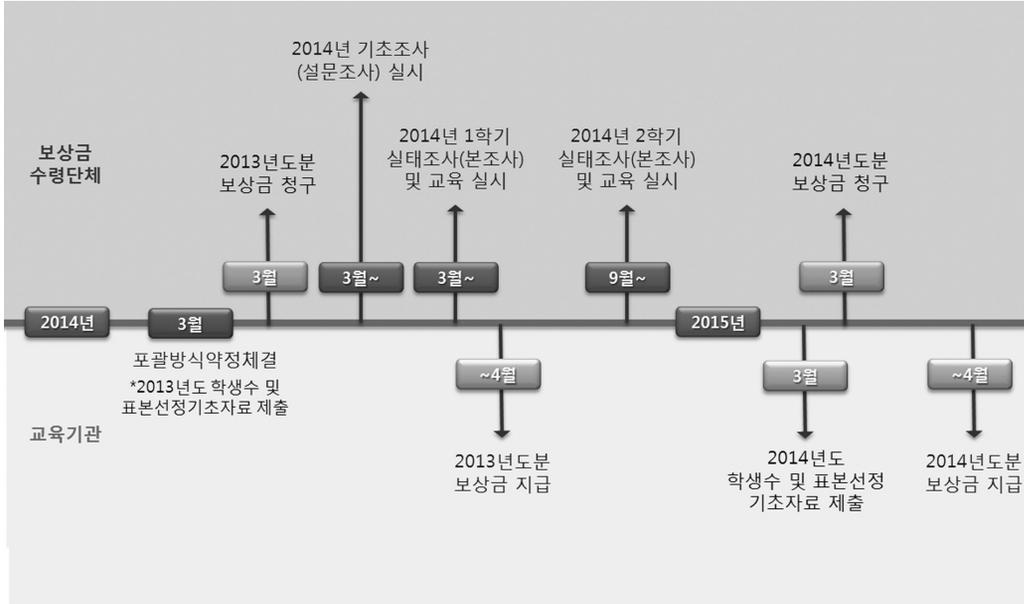
3.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의 표시(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 약정서 별지서식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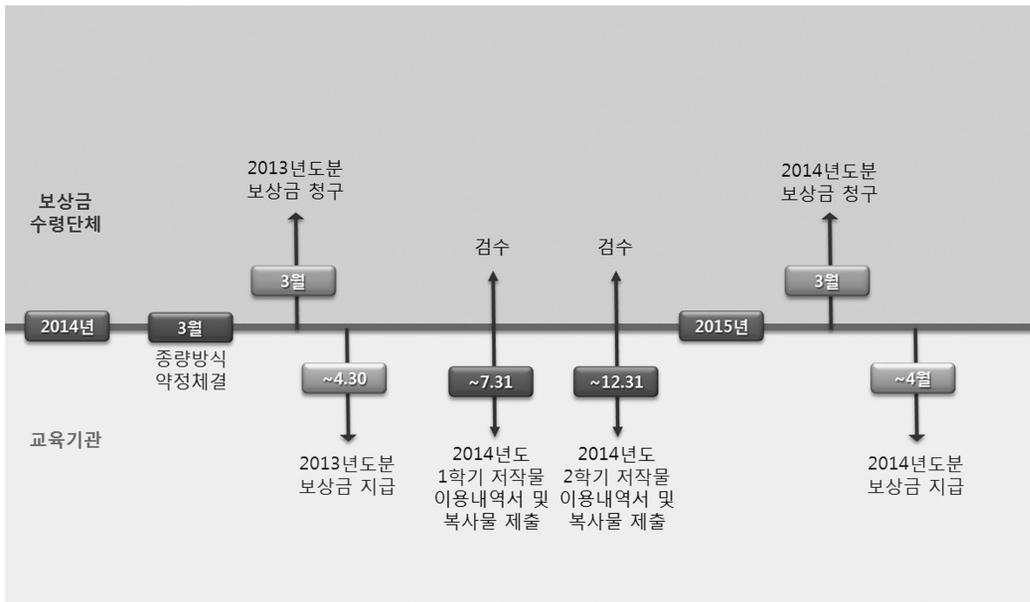


IV. 보상금 제도운영 일정표

1. 포괄방식



2. 종량방식



I 보상금제도의 이해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III 보상금제도 이용가능범위

IV 보상금제도운영 일정표

V 약정서 기타 참고자료





V. 약정서

I 보상금제도의 이해

II 보상금제도 이용안내

III 보상금제도 이용가이드

IV 보상금제도 운영 일정표

V 약정서

1. 포괄방식 약정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수령단체”라 한다)와 저작물 이용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간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② “수령단체”라 함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③ “교육기관”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 <별지서식·1>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령단체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보상금 확정 및 지급) ① 수령단체는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확정하여 교육기관에 청구하고,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지정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 지정계좌 : 220601-04-215892(국민은행)

●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② 교육기관이 제①항에 의한 보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이행사항 협조) ①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태조사에 협조한다.

1. 교육기관은 실태조사 및 보상금 지급 등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령단체에 통지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한다.
2. 교육기관 담당자는 조사기간 동안 대학에서 실태조사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고, 실태조사의 중요성과 대학의 의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3. 수령단체는 <별지서식·2>의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보하기로 한다.
4. 수령단체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해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에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2.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에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③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 표시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기관은 이용 방법에 따라 <별지서식·3>의 저작권 경고문구를 사용하기로 한다.
- ⑤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이 보상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약정 기간)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수령단체의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지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약정기간 중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약정의 변경 및 이견처리) ①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이 본 약정체결 당시 상호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약정서상의 일부 조항 변경 또는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은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 불이행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의 해지) 다음의 각호의 경우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약정 당사자가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수령단체가 제10조에 의한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교육기관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재판 관할) 본 약정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조(약정서 보관)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은 본 약정서를 증거로 삼기 위하여 약정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 . .

보상금수령단체	교육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oo대학교
이사장 정 흥 택 (인)	총 장 (인)

<별지서식 · 1>

수업목적보상금 이용 대학 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정보														
기관명					대표자									
주소	(우 : -)													
홈페이지					대학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대 <input type="checkbox"/> 전문대 <input type="checkbox"/> 원격대								
담당자					부서명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					팩스									
2. 학생수 정보 * 대학원생을 포함하며, 4월 및 10월 공시의 평균값														
대상연도	학생수(명)													
	4월 공시				10월 공시				평균					
2013														
3. 표본선정 실태조사 기초자료 * 협회 엑셀양식에 따라 파일형태로 별도 제출														
기관명	계열명	학과명	학부 / 대학원 구분	학년도	학기	과목명	교수명	교수 연락처	조교명	조교 연락처	수강생수	수강대상 학년	시간강사 여부	교양 여부

※ 귀 기관에서 제출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업목적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수업목적에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3자(실태조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제공됩니다.

<별지서식·2>

저작물 이용내역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학교 1)	기관 코드 2)	학과 3)	이용 년도 4)	학기 5)	강좌 명 6)	과목 코드 7)	저작 물명 8)	저작 자명 9)	출처 10)	발행 연도 11)	저작 자 소 재 12)	종류 13)	이용 형태 14)	이용 량 15)	수강 인원 16)	이용 방식 17)	보상 기준 18)	보상 금 19)

- 1) (시스템 자동입력)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학명
- 2) (시스템 자동입력)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학의 코드
- 3) 학부 및 학과명을 기입
- 4) 저작물 이용 연도
- 5) 1학기, 2학기로 구분
- 6) 강좌명을 기입
- 7) 교내에서 이용되는 과목코드가 있는 경우 입력
- 8) 이용한 저작물의 명칭을 기입
- 9) 저작자명을 기입하되, 영상물의 경우 제작사 명 입력
- 10) 단행본의 경우 출판사명, 학술논문의 경우 학회지 명을 기입하고 인터넷에서 획득한 자료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 (속성 URL포함) 기입
- 11) 단행본 및 학술논문의 경우 발행연도 기입
- 12) 저작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경우 기입
- 13) 보상금 기준에 따른 어문, 음악, 영상물, 이미지, PPT로 구분
- 14) 복제, 배포, 전송, 방송, 공연으로 구분
- 15) 실제 수업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의 이용량
- 16)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수강 총인원)를 명기
- 17) 온라인(사이버강의 등) 또는 오프라인(강의실 수업)으로 구분
- 18) (시스템 자동입력) 보상금 고시 기준 내역
- 19) (시스템 자동입력)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기준" 산정 금액

<별지서식 · 3>

저작권보호를 위한 경고문구의 활용

1. 경고문구 활용방안

구분	복제물의 경우	전송의 경우	비고
게재위치	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	전송 개시 첫 화면에 배치	
게재방법	① 별도페이지로, 색지 등을 사용하여 복제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② 한권으로 구성된 연속 복제물 일 경우 전체 시작페이지에 1회 ③ 스프링 등 분철된 연속 복제물 일 경우 매권 시작페이지에 1회	① 별도 화면으로 구성 ② 1회 전송일 경우 시작화면에 배치 ③ 2회 이상 전송일 경우 매 전송마다 배치 ※ 사이버강의실의 경우 각 교과목별 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	
크기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할 것(굵은 글자 포함)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5초 이상 노출할 것	

2. 경고문구 내용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14. . . .
_____ 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제물의 경우 경고문구>

본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업자료의 대중 공개·공유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14. . . .
_____ 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2. 종량방식 약정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종량)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수령단체"라 한다)와 저작물 이용자인(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간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② "수령단체"라 함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③ "교육기관"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 <별지서식·1>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령단체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저작물 이용내역 제출 및 확인) ① 교육기관은 <별지서식·2>의 저작물 이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하여, 수령단체가 지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확인을 위하여 교육기관은 수령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온라인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관리자 계정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오프라인 이용 저작물의 복사물
3. 교육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③ 교육기관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자료를 허위 또는 미제출한 경우 및 보상금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④ 수령단체는 교육기관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보상금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기관의 사전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5조(보상금 확정 및 지급) ① 수령단체는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확정하여 교육기관에 청구하고,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아래 지정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2013

년도분 보상금은 합의에 따라 「포괄방식」으로 청구함. 이용내역을 입증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증량방식」으로 청구되며 이 경우 이용내역 제출 및 산정장치 인증 기한은 2014. 3. 31.임)

● 지정계좌 : 220601-04-215892(국민은행)

●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② 교육기관이 제①항에 의한 보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이행사항 협조) ① 교육기관은 이용내역서 제출 및 보상금 지급 등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령단체에 통지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한다.

② 교육기관 담당자는 교육기관의 이용내역서 제출 및 보상금 지급 등 업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고, 이용내역 제출의 중요성과 대학의 의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에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2.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에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④ 교육기관은 제③항 제3호에 의한 장치에 대해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령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 표시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이용 방법에 따라 <별지서식·3>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사용하기로 한다.

⑦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이 보상금 이용내역서 및 저작물 이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약정 기간)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수령단체의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약정기간 중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약정의 변경 및 이견처리) ①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이 본 약정체결 당시 상호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약정서상의 일부 조항 변경 또는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②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은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 불이행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9조(약정의 해지) 다음의 각호의 경우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약정 당사자가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수령단체가 제10조에 의한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교육기관이 저작권 법제25조

제2항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재판 관할) 본 약정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조(약정서 보관) 수령단체와 교육기관은 본 약정서를 증거로 삼기 위하여 약정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 .

보상금수령단체

교육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oo대학교

이사장 정 흥 택 (인)

총 장 (인)

<별지서식 · 1>

수업목적보상금 이용 대학 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정보			
기관명		대표자	
주소	(우 : -)		
홈페이지		대학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대 <input type="checkbox"/> 전문대 <input type="checkbox"/> 원격대
담당자		부서명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		팩스	
2. 보상금 산정 장치 접근정보			
접근주소(URL)			
ID		비밀번호	

2013년도 포괄방식 산정을 위한 정보

3. 학생수 정보 * 대학원생을 포함하며, 4월 및 10월 공시의 평균값			
대상연도	학생수(명)		
	4월 공시	10월 공시	평균
2013			

※ 귀 기관에서 제출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업목적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수업목적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3자(실태조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제공됩니다.

<별지서식·2>

저작물 이용내역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학교 1)	기관 코드 2)	학과 2)	이용 년도 4)	학기 5)	강좌 명 6)	과목 코드 7)	저작 물 명 8)	저작 자 명 9)	출처 10)	발행 연도 11)	저작 자 소재 12)	종류 13)	이용 형태 14)	이용 량 15)	수강 인원 16)	이용 방식 17)	보상 기준 18)	보상 금 19)

- 1) (시스템 자동입력)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학명
- 2) (시스템 자동입력)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학의 코드
- 3) 학부 및 학과명을 기입
- 4) 저작물 이용 연도
- 5) 1학기, 2학기로 구분
- 6) 강좌명을 기입
- 7) 교내에서 이용되는 과목코드가 있는 경우 입력
- 8) 이용한 저작물의 명칭을 기입
- 9) 저작자명을 기입하되, 영상물의 경우 제작사 명 입력
- 10) 단행본의 경우 출판사명, 학술논문의 경우 학회지 명을 기입하고 인터넷에서 획득한 자료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속성 URL포함) 기입
- 11) 단행본 및 학술논문의 경우 발행연도 기입
- 12) 저작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경우 기입
- 13) 보상금 기준에 따른 어문, 음악, 영상물, 이미지, PPT로 구분
- 14) 복제, 배포, 전송, 방송, 공연으로 구분
- 15) 실제 수업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의 이용량
- 16)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수강 총인원)를 명기
- 17) 온라인(사이버강의 등) 또는 오프라인(강의실 수업)으로 구분
- 18) (시스템 자동입력) 보상금 고시 기준 내역
- 19) (시스템 자동입력)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기준" 산정 금액

<별지서식 · 3>

저작권보호를 위한 경고문구의 활용

1. 경고문구 활용방안

구분	복제물의 경우	전송의 경우	비고
게재위치	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	전송 개시 첫 화면에 배치	
게재방법	① 별도페이지로, 색지 등을 사용하여 복제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② 한권으로 구성된 연속 복제물 일 경우 전체 시작페이지에 1회 ③ 스프링 등 분철된 연속 복제물 일 경우 매권 시작페이지에 1회	① 별도 화면으로 구성 ② 1회 전송일 경우 시작화면에 배치 ③ 2회 이상 전송일 경우 매 전송마다 배치 ※ 사이버강의실의 경우 각 교과목별 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	
크기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할 것(굵은 글자 포함)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5초 이상 노출할 것	

2. 경고문구 내용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14. . . .

_____ 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제물의 경우 경고문구>

본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업자료의 대중 공개·공유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14. . . .

_____ 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기타 참고자료>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수업 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 (법인명)	한글)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 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일부 저작물()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각급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뒤 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대학 수업에서 본 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문의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보상금사업팀

157-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TEL : 02-2608-2800

FAX : 02-2608-2031

<http://www.korra.kr>
